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장비 반입 금지〉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10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이정문 · 김기표 · 이연희 · 장경태
홍기원 · 박균택 · 이해식 · 박해철 · 권칠승 · 김남희
송옥주 · 최혁진 · 조정식 · 박지원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 의안번호 : 152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5조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 장치 무단 반입 금지 명시 등

개정안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장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 설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생략)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란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장장치 등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음향 장치를 포함한다. 의장 및 위원장은 필요 시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 제148조¹⁾에 따라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동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해 왔음.²⁾

1)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2) 본회의장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진행하거나(2024. 12. 7.) 무선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한 사례(2025. 12. 9.)가 있었으며, 당시 의장이 제지하여 모두 중단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향 장치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품 반입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문에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을 열거·예시하는 경우 기술 발전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해당 물품을 전부 규율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규정방식을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철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문의 규정취지는 현행법 제145조³⁾에 따른 질서유지권의 활용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실현할 수 있어 보임.

3)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에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철거·사용 중지 명령 미이행 추가

개정안은 의원 징계 사유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반입하여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5조).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제148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 의장 및 위원장이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했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0. ~ 16. (생략)	11. ~ 18.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64조⁴⁾에 따라 현행

법 제155조 각 호는 의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헌법상 청렴 또는 지위남용의무,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 규정 및 「국회의원윤리강령」·「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개정안은 의원의 징계 사유에 안 제148조를 위반하여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 철거 또는 사용 중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국회의 자율권을 통해 제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반입하여 철거·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위신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55조제8호⁵⁾는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4)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5)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활용하여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제155조에 제10호를 신설하면서 기존 규정(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조문번호가 순연되었으나 제155조 단서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⁶⁾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0. (신설 조문)

11.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기존 제10호**)